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 범위 확대〉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4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 범위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 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 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 1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여되는 주요 회의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u>회의</u> 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u>회의(국가기관이 제1항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한다)</u>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에 의하면 공공기관¹⁾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함.

<현행 법령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회의 종류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상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또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는 다음과 같음²⁾.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의미함(「공공기록물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 회의 종류>

회의 종류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장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및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때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설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문제된 바 있음.³⁾

2) 특히, 이 중 (1)~(3), (5), (6)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함.

3) 관련보도 : “의대 배정위 자료 논란…교육부 “회의록 아닌 참고자료 파쇄””, 연합뉴스, 2024.08.16.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동아일보, 2024.08.17.

이에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여되는 주요 회의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를 추가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에 대해서도 상설·법정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록 장치, 자동 음성 인식 등 기술의 발달로 회의록 작성 부담이 과거에 비해 경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도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공공기록물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7조(조사·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①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해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